



| | |
|------|-------|
| 의안번호 | 제137호 |
|------|-------|

**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논산시장 |
| 제출연월일 | 2020. 10. 13. |

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137호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연월일 : 2020. 10. 13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 입사항을 반영하고, 논산사랑 지역화폐 운영 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화폐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역화폐 가맹점의 “지정” 을 “등록” 으로 한다.

(안 제2조, 안 제5조)

나. 지역화폐의 형태를 종이형, 카드형, 모바일형으로 구분하고, 종이형 5만원권을 추가한다. (안 제4조)

다.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의 등록 정보를 공개하고, 취소 시에도 이를 공개한다.(안 제7조, 안 제8조)

라. 가맹점은 권면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그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100분의 60이상으로 개정한다.(안 제9조)

마. 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는 “월 40만원, 연 400만원” 에서 “월 100만원” 으로 한다.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 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9. 9. ~ 2020. 9. 30. (기간중 22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(041-635-3444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지정” 을 “등록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역화폐는 3종으로 하며,” 를 “지역화폐의 형태는 종이형, 카드형, 모바일형으로 구분하며, 종이화폐의” 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5만원권

제5조 중 “지정” 을 “등록” 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지역화폐 가맹점 자격요건) 판매된 지역화폐는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.

1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
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

제7조의 제목 “(판매대행점 지정 및 준수사항)” 을 “(판매대행점 협약 및 준수사항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정받고자” 를 “등록하고자” 로, “한다.” 를 “하며,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.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정된” 을 “등록된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상품권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

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의 제목 “(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)” 를 “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지정을” 을 “등록을” 로, “지정 신청서” 를 “등록 신청서” 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지정된” 을 “등록된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정 신청서” 를 “등록 신청서” 로, “지정서를” 을 “등록증을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정계약” 을 “등록계약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지정을” 을 “등록을” 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지정” 을 “등록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
2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서 정한 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
3. 유흥업소
4.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, 그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80이상” 을 “60이상” 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단서 중 “월 40만원, 연 400만원” 을 “월 100만원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 관 부 서 | | 성 명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사회적경제과장 | 김 민 영 |
| | 사회적경제팀장 | 김 민 자 |
| | 담 당 자 | 박 병 주 (041-746-6015) |

[별지 제4호서식]

00 - 호

논산사랑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증

- 상 호 :
- 소재지 :
- 성 명 :
- 생년월일 : (남, 여)

「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2항에 따라
논산사랑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.

년 월 일

논 산 시 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“가맹점”이란 시장과 가맹점 <u>지정</u>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한다.</p> <p>4. (생 략)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등록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4조(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) ① <u>지역화폐는 3종으로 하며,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| <p>제4조(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) ① <u>지역화폐의 형태는 종이형, 카드형, 모바일형으로 구분하며, 종이화폐의 -----</u>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5만원권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조(유통지역)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<u>지정</u>할 수 있다.</p> | <p>제5조(유통지역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등록</u>-----.</p> |
| <p>제6조(지역화폐 사용대상) <u>판매된 지역화폐는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</u></p> | <p>제6조(지역화폐 가맹점 자격요건) <u>판매된 지역화폐는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</u></p> |

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1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
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
3.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(출자·출연기관 포함)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운송업, 문화시설, 체육시설 등

제7조(판매대행점 지정 및 준수사항)

①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지역화폐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·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, 지역화폐의 분

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

1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
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

제7조(판매대행점 협약 및 준수사항)

① -----
-- 등록하고자 -----

----- 하며,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

② ----- 등록된 -----

급한다.

③ 시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및 유흥업소, 사행성 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.

⑤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

-----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
2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서 정한 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
3. 유흥업소
4.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④ ----- 등록계약-----

-----.

⑤ -----

----- 등록을 -----
-----. <단서 삭제>

1. -----
----- 등록-----

2. 3. (생략)

<신설>

제9조(가맹점 준수사항) ①·②
(생략)

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역화폐 권면금액(지역화폐 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) 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14조(할인 및 수수료)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 다만, 지역화폐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40만원,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,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9조(가맹점 준수사항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60이상 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할인 및 수수료) ① -----

----- 월 100만원 -----

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해당 없음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해당 없음

나. 추계결과

해당 없음

3. 작성자

사회적경제과장 김 민 영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)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
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

3.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,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8조(가맹점 등록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
2.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3.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

참고 2

필수조례 관련공문

-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-10631(2020. 7. 23.)호 관련, 2021(20년 실적)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과제(1-3-1-라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)